

1. 개정이유

제485회 규제개혁위원회(2021.10.22)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의 이중규제를 우려하여 개선·부대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규제가 2023년 6월 15일로 실효됨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만료이후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 관련 허가기준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그 협의결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비용 저감을 위해 제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제51조의4(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5천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의무는 2023년 6월 15일까지만 유효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허가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계 조문을 정비

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5조의6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표1의5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조사 및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예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연계되는 별표 등 정비(안 별표1의3, 안 별표1의5 신설, 안 별지 제4호의3서식)

별표, 별지서식 등에 따로 규정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별표1의5를 신설하여 정비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월 ~ 4월)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660제곱미터”를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산정한다)인 경우에 한정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결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아목 및 차목”을 “아목, 차목 및 카목”으로, “아목 또는 차목”을 “아목, 차목 또는 카목”으로 한다.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1부(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등) 법 제15조의2제9항,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표 1의5에 따르되, 그 외 조사 및 작성과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제목란의 (앞쪽)을 삭제하고, (뒤쪽)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차목·타목 및 제15조의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새로이 편입되는 면적이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적용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별표 1의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새로이 편입되는 면적이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5]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기준(제15조의6 관련)

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작성 후 허가신청 시 제출한다.
 - 가. 산지전용허가 :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나. 산지일시사용허가(태양에너지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 다.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산지일시사용허가 : 일시사용하려는 산지 전면적
 - 라.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일단의 산지가 산지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변경허가의 경우로서 새로이 편입되는 면적이 가목 내지 나목의 면적 미만인 경우(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산지를 분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용도로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 4)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복구의무면제를 받아 당초 사업계획과 동일하게 다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 5) 사업계획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다수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사면 및 계곡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송전시설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허가신청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로 붕괴나 토사유출 등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한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 가. 산사태 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 나.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 위험조사 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재해위험조사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3.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은 다음 구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 개소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산지전용허가: 4개소

나. 산지일시사용허가(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포함한다)

1) 일시사용하려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개소

2) 일시사용하려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4.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해위험조사표준지는 다음 구분에 따라 선정한다.

가. 산지전용허가: 2개소

나. 산지일시사용허가(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포함한다)

1) 일시사용하려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개소

2) 일시사용하려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 ----- ----- -----.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 -----
가. ~ 자. (생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u>660제곱미터</u>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결한 산지	차. ----- ----- ----- ----- ----- ----- ----- ----- ----- <u>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u> ----- ----- ----- -----

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카. (생략)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생략)

나. 제1호바목, 아목 및 차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 바목, 아목 또는 차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생략)

③ ~ ⑦ (생략)

<신 설>

----- 산정한다)인 경우에 한정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결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 1부(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타. (현행 카목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아목, 차목 및 카목-----
----- 아목, 차목 또는 카목-----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재해위험성 검토의견

서의 작성 등) 법 제15조의2제9
항,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18
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표 1의5에 따르되, 그 외 조사
및 작성과 제출에 관한 세부사
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